

II

법인지방소득세

1 총 칙

□ 납세의무자 [지법 § 86]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소득	과세	X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과세	X

-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법 §2③),
②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법법 §1(4))에 해당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법 § 34]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법 § 87]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지방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양도소득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국내 소재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
세 율	1~2.2% 누진세율	1%(미등기 4%)	1%~2.2% 누진세율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연도** [지법 § 88]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 초과 불가

구 분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		법령·정관등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 신고 O	신고한 사업연도
	사업연도 신고 X	매년 1.1 ~ 12.31

○ 사업연도 의제

사유	사업연도		
	1사업연도	1사업연도	
해산시	1.1	6.30 (해산·파산등기일)	12.31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1.1	7.10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에 의해 소멸시	1.1	7.20 (합병·분할등기일)	
청산 중 사업계속시	1.1	4.30 (사업계속등기일)	12.31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폐지시	1.1	6.30 (국내사업장 폐지)	
외국법인의 부동산 소득 미발생시	1.1	5.31 (신고일)	
설립무효·취소 판결시	1.1	5.1 (확정판결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1.1	4.30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 **납세지** [지법 § 89]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안분)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납부함

안분율

$$\text{산출세액} \times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소수점 6자리까지 산정 권장

안분방법

$\begin{aligned} & \times \frac{\text{산출세액}}{\text{안분율}} \\ & - \frac{\text{사업장별 산출세액}}{\text{세액공제·감면}} \\ & + \frac{\text{결정세액}}{\text{가산세}} \\ & - \frac{\text{총결정세액}}{\text{기납부세액}} \\ & \pm \frac{\text{납부할세액}}{\text{경정·수정신고 가감액}} \\ & \text{사업장별 납부 세액} \end{align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가산세(무기장 등)는 안분하여 가산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납부 또는 수시부과된 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특별징수 납세지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특별징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 청구)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개정 후 지방세법에서는 10% 미만 가감 신고 특례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음
---	--

- 참 고**
- 종업원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단,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이란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인적설비 -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 물적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사 례

- ❖ 원천징수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행안부 지방세운영-52, 2011.1.6.)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사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한 법인세의 납세지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라 할 것임
- ❖ 본점에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행자부 세정 13430-99, 2000.1.24.)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임

□ 비과세 법인세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